#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58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김준혁・박지원・한창민

문정복 • 박수현 • 강득구

이수진 • 윤종오 • 진선미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 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는 제2항 자녀와 제3항 손자녀를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
	승)
<u>&lt;신 설&gt;</u>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
	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
	조의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는
	제2항 자녀와 제3항 손자녀를
	<u>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u>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